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34 | 2026. 6. 1 (2026.5.26~2026.5.3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국방부>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은 대한민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非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신축 관련 非아파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향후 2년간('26~'27) 4.1만호, 2030년까지 11만호를 공급하고,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가동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 지연물량 10만호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장회사가 독립이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법인등기부에 독립이사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서비스뿐 아니라 근로자가 희망하는 재취업활동도 선택 시 사업주가 편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2인)」,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1인)」,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인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1인)」** ,

국가데이터의 종합적인 총괄·조정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과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안(조승래의원 등 11인)」** ,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유형화하여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편 광고의 제공·유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섭하는 한편,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 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에 따른 방송광고 외에도 「전기통신기본법」 에 따른 전기통신에 의한 광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디지털광고물에 해당하는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3인)」** ,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표준보수지침 마련, 콘텐츠사업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부과, 임금체불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에 관한 제재 조치 등을 마련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술의원 등 10인)」** ,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된 태양에너지·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 및 발전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임종득의원 등 1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이번 주는 6.3 지방선거 등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이 없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국방부) 6
- 「非아파트 공급 확대,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 지원」 발표(국토교통부)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9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부) 9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부) 9
-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10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부) 10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보건복지부) 10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1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1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무부) 13
-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재정경제부) 13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방부) 1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소방청)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2인) 16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16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1인) 1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1인) 17
- 국가데이터기본법안(조승래의원 등 11인) 1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18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18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3인) 19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20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20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21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21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22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의원 등 11인) 2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2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2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금융]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에 따른 상장기업의 대응 전략
- [방송통신(TMT)] AI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2026 정기주주총회 리뷰: 제도 정비에서 실질 작동으로
- [방송통신(TMT)]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본격화 - 과기정통부·식약처, 'AI 수입식품 검사 해결책(솔루션)' 시연회 개최
- [건설/부동산] 발주자가 용역수행을 방해하지 않은 이상, 용역을 수행하지 못한 용역수행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책임 없어
-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 핵추진잠수함을 체계적으로 개발·획득하기 위한 기본원칙, 방향성, 핵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입장 등을 제시 -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목표	2026-05-26
-----	--	------------

국방부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은 대한민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제시하는 문서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 등 기존 디젤잠수함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②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단순한 함정 건조사업을 넘어, 우리나라 원자력, 조선 분야의 기술을 토대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국가전략 사업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준수하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할 것임
 -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의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도록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게 개발
 -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
 - 핵추진잠수함의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대한민국 내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개발
 - 핵추진잠수함의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 및 관리하여, 지속 운용성을 확보
 - 30년대 중반에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
- ③ 또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며, 이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약속
 -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
 - 대한민국은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추진잠수함 추진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
 - 대한민국은 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임
- ④ 아울러, 대한민국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간 원자력 안전과 보안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며, 핵추진잠수함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임

⑤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조선, 원자력, 방산을 잇는 40여 년(건조 10년+운용 30년 이상)에 걸친 국가 산업 발전 프로젝트로서 산업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음**

-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통해 축적되는 기술과 인프라는 연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4만 개 이상의 안정적인고 질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국토교통부

「非아파트 공급 확대,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 지원」 발표

- 수도권 非아파트 '26~'27년 향후 2년 간 4.1만호, '30년까지 11만호 공급
- 신축 관련 건설금융 지원 확대 및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2026-05-26

국토교통부는 지난 5.22일 1차로 민간 非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하고자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를 사실상 "무제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번에는 2차로,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非아파트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신축 관련 非아파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향후 2년간('26~'27) 4.1만호, 2030년까지 11만호를 공급하고,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 지연물량 10만호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①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향후 2년 간 2.6만호, 2030년까지 7.7만호 인허가를 목표로 지원**

- 도시형생활주택은 과거 2012년도에 최대 12만호(수도권 7.4만호)까지 공급되었으나, 부동산 PF 위기 및 분양성 저하 등으로 2023년 이후 5천호 내외 수준으로 급감
- 이에 정부는 세대수 제한 완화(「주택법」 법사위 통과), 층수 제한 완화, 일조권 등 건축 규제를 개선하여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

② **1인 가구 증가와 건축물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낮은 사업성과 겹겹이 규제된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여 향후 2년간 1.5만호, 2030년까지 3.3만호 이상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

- 이를 위해 LH가 올해 2천호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우선 리모델링 후 지속 확대해나가고, LH 내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하여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시공 업체 매칭 및 사업 컨설팅을 제공
- 공실을 등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27)
-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도시·건축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즉시 입주자 가능하도록 입주자격도 완화

- ③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건설금융 조달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非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을 강화**
- 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지원을 확대
 -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 및 준주택 모기지 보증을 신설·지원
 - HUG 보증이 아파트에 특화하여 운영되어왔으나, 수도권 대상으로 非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 및 ‘분양 보증’을 새롭게 출시하여 사업성·수요 검증을 거친 非아파트 사업장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 ④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출범하여 주택 사업장별 공급 애로요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승인 후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10만호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약 32.3만호에 달하며, 이 중 10만호가량은 평균 대비 착공이 1년 이상 지연 중인 것으로 추산
 -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기관별 법령해석 차이, PF 자금조달 애로, 자재수급 미스매치에 따른 공사비 분쟁 등으로 착공지연이 발생 중인 것으로 파악
 - 이에, 주택사업 관련 주요 3개 협회*에 전담 창구를 두어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금융, 자재·공사비 등 관계 부처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 논의를 진행해나갈 계획
 - 아울러, 신축 건설은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활동인 만큼, 금융기관이 사업성·생산성 기반 자금지원이라는 원칙하에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독려

정부는 금번 제도 개선사항이 하루 빨리 주택사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개정 사항은 즉시 개정·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도 3개월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즉각 실무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재정경제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5-26 시행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피우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피우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배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종전에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연초를 원료로 하는 궤련 담배 중심으로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체형태의 담배에 대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연간 40만리터 이상의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담배의 유형별로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을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6-11-27 시행 예정
-------	-------------------	------------------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사 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11-27 시행 예정
-------	-------------------------------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등이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보도록 하며,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중 보유기술을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보유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50퍼센트' 초과에서 '30퍼센트' 초과로 완화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설립 등의 경우 출자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2027-05-27 시행 예정

전기차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바,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6-03 시행 예정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 내용이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에는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과 부가조건의 변경·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융합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5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절차 간소화 대상이 되는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변경·취소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며,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11-27 시행 예정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6-03 시행 예정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비슷한 규모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61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의 과징금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율의 형평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2026-11-27 시행 예정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5-26 시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신고 또는 제보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고, **포상금의 지급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포상금의 지급 재원을 예산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5-26 시행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기준을 변경하고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금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28. ~2026.06.29.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상법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가 2027. 1. 1. 시행 예정으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상법 제542조의8 등이 2026. 7. 23. 시행 예정으로 이에 따라 상법 시행령상 사외이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장회사가 독립이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법인등기부에 독립이사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을 금지한 상법 제341조의3 제2항의 시행에 따라 이와 관련한 상법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는 서면신고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 문의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 \(전화: 02-2100-3635, 팩스: 02-2100-0331\)](tel:02-2100-3635)

재정경제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05.26. ~2026.06.15.
-------	--	-----------------------------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음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의 경우 2025년 3월 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실 \(전화: 044-215-4462\)](tel:044-215-4462)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26. ~2026.06.15.
-----	------------------	-----------------------------

①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 (안 제24조제1항)

-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령 규정 개정 필요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 또는 신속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을 "소요가 결정된 경우"로 개정하여, 소요 결정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세부절차 조정

② 기품원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3항 개정, 제37조의3,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이 방위사업법 개정('25.12월)을 통해 마련됨에 따라, 공유재산 추가 및 세부절차 등 시행령 후속 개정 필요
- 제37조의3(무상 사용허가·대부), 제37조의4(양여 세부절차)를 별도 신설하고, 공유재산 특례 추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준용하도록 제37조의5 신설

③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기간 확대 (안 제68조제7항제4호)

- 수출한 무기체계의 안정적 정비지원 및 K-방산 신뢰성 제고를 위해 '24년 국무조정실 주관 방산수출 규제개선 협의를 통해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기간 확대 추진
- 수출허가 면제요건에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을 5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동일 물품 및 수리부속 인정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단서 신설

※ 문의처 : 국방부 전력정책과 (전화: 02-748-5674)

고용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29.
~2026.07.08.

전직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1천명 이상 → 500명 → 300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서비스뿐 아니라 근로자가 희망하는 재취업활동도 선택 시 사업주가 편의 제공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방식을 개선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전화: 044-202-7465, 팩스: 044-202-8053)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26.05.29.
~2026.07.08.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03.17. 공포, 2026.09.18.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전화: 044-203-5366, 팩스: 044-203-4769)

소방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27.
~2026.07.07.

경기 화성시 소재 전지공장에서 리튬일차전지 화재('24.6.24.)로 다수의 인명피해(사망 23, 부상 8명)가 발생하는 등 리튬일차전지로 인한 대형 화재 위험성이 현실화됨. 리튬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저장·취급·운반 등에 안전관리를 받고 있으나, 제품형태로 제조된 리튬일차전지는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일차전지에 대한 체계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최근 전지·전자제품의 리튬전지 사용량 증가에 따라 자원순환시설로 폐전지가 다수 혼입되어 빗물 등과 접촉하여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폐전지의 안전관리 기준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화재 시 급격한 연소 및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일차전지 및 폐전지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함으로써, 저장·취급 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소방청 예방정책과](#) (전화: 044-205-7451, 팩스: 044-205-914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2인)	2026-05-26 발의
---------------	--------------------------------	---------------

최근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은 핵심기술 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및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 제4조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3항 및 제27조의2 신설 등)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2026-05-26 발의
---------	-----------------------------	---------------

현행법은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상근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대손금의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법정 적립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의 업무집행과 회계처리를 독립적 지위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상근감사의 경우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법정적립금을 유사 사례와 동일하게 대손금 상각이 아닌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고의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회계유용성 제고를 위해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용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21조제1항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1인)	2026-05-27 발의
-------------------	-------------------------------	---------------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는 심의단계와 설계단계에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MDF), 총통신실(TPS),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 또는 부족하게 반영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건물의 지능화,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집약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홈으로 진화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021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아파트 해킹사건과 유사한 보안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설계부실로 인한 보안 취약점 발생 등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공사의 규모와 종류별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품질 및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설계품질을 확보하며 공사의 품질 및 기술 안전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1인)

2026-05-27 발의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을 위하여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공공 행정망 장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장애 발생 시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큰 대형 사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역량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인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공공 행정망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48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데이터기본법안(조승래의원 등 11인)

2026-05-27 발의

현재 데이터의 관리·활용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 영역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민간데이터 영역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각각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가 차원에서 핵심 분야의 데이터가 개별 기관에 분산·관리됨에 따라 데이터 간 연계·결합을 통한 정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가 차원의 고품질 데이터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데이터의 종합적인 총괄·조정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과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2026-05-29 발의

미디어 환경이 OTT, 온라인 중심의 다매체, 다채널 시장으로 재편되고 콘텐츠 시청 행태가 수동적, 실시간 행태에서 능동적, 비실시간 행태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방송 환경에서 마련된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고 방송사업자의 편성, 제작에 있어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함(안 제69조제3항)
- ②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함(현행 제71조제4항 삭제)
- ③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체 방송프로그램 및 주시청시간대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제 대상에서 지역방송사업자 등을 제외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3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2026-05-29 발의

최근 디지털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광고 제공 방식이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이용자의 정상적인 정보 이용을 방해하는 이른바 ‘플로팅 광고’, ‘납치 광고’ 등의 이용자 불편 광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는 이용자의 자율적인 정보 선택권과 접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 및 플랫폼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건전한 광고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콘텐츠를 가리는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납치 광고 등의 신유형 불편 광고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유형화하여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편 광고의 제공·유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섭하는 한편,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3인)

2026-05-29 발의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로 콘텐츠 생산·유통구조를 포함한 미디어 산업의 시장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5.10.1. 제정되어 방송·통신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음

이러한 환경에서, 광고주는 광고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기존 방송과 인터넷, 모바일 매체 등의 다중매체를 결합하여 광고하는 크로스미디어 광고를 집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방송매체는 기존의 TV 방송망 뿐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여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변화된 미디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역할이 제한됨으로써 지역 및 중소 방송매체의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광고주의 유치가 어려워지고,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합한 광고 집행이 어려워 이러한 광고 규제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자원 창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 또한, 이러한 규제가 광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함

따라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에도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에 의한 광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디지털광고물에 해당하는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방송매체와 인터넷·모바일매체, 전광판, 디지털광고물을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에 관한 광고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방송매체와 통신매체 등이 융합된 미디어 산업 환경에 맞는 광고 시장을 조성하여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1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2026-05-29 발의

현행법은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복수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통상 9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의 경우에도 대부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가 지연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승의원 등 10인)

2026-05-26 발의

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예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행위를 금지하며, 예술인보호관 제도를 통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조사 등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OTT 플랫폼 및 외주 제작 구조의 심화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이 만연하고 있고, 현행법의 우선 적용 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예술인에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예술인보호관이 국장급 공무원의 겸직 구조로 운영되고 신고 및 조사 사건 처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질적인 조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명시하며, 예술인보호관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보호관을 보조하는 담당관의 확보 노력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27조 제1항·제6항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술의원 등 10인)

2026-05-26 발의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작 등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사업자의 상호 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및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보호 지침의 제정 등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표준계약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 권고에 그치고 있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콘텐츠 제작 등 과정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표준보수지침 마련, 콘텐츠사업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부과, 임금체불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에 관한 제재 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8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제11호,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술의원 등 10인)

2026-05-26 발의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본 투자와 기업 육성 등 ‘산업·경제적 진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K-콘텐츠 성장의 주역인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문화산업종사자의 권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및 문화산업종사자의 대표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3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2026-05-27 발의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도 증가하면서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이 정주여건 보호 필요성이 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4항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의원 등 11인)

2026-05-28 발의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의 제출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음

정부광고를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세금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집행내역에 대한 정부광고주의 정보공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매체 정보의무적 확인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부광고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짜뉴스 확산 매체 등에 대해서도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며, 정부광고주가 매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정부광고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임

끝으로, 정부광고 제도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태조사 및 품질평가 등의 기능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조 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6조의2·제6조의3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2026-05-26 발의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리·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청구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역시 재결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소송 청구 등에 관한 안내 의무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및 제109조의 규정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결정·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인 심사 청구인·재심사 청구인이 결정·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와 제109조를 개정하고자 함 (안 제105조제6항·제7항, 제109조제3항·제4항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2026-05-28 발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치 시공자에게 5년 이내에서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 등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영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노후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노후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된 태양에너지·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 및 발전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6/1(월)	「금주의 보고서」 제2026-19호(통권 제51호) 발간	국회도서관	
	6/3(수)	「금주의 서평」 제2026-21호(통권 제780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5/2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10호(통권 제298호)	국회도서관	
	5/27(수)	「금주의 서평」 제2026-20호(통권 제779호)		
	5/27(수)	「Data+」 제2026-8호(통권 제32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5/26(화)	금융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에 따른 상장기업의 대응 전략
5/26(화)	방송통신(TMT)	AI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27(수)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2026 정기주주총회 리뷰: 제도 정비에서 실질 작동으로
5/28(목)	방송통신(TMT)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본격화 - 과기정통부·식약처, ‘AI 수입식품 검사 해결책(솔루션)’ 시연회 개최
5/28(목)	건설/부동산	발주자가 용역수행을 방해하지 않은 이상, 용역을 수행하지 못한 용역수행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책임 없어
5/29(금)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5/29(금)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